

조찬간담회 개최

본 협회는 지난 4월 26일(수) 7시 30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박상조 정책국장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홍동표 박사를 초청하여 「공정거래법 개정내용에 따른 정책방향」과 「정보기술 발전과 경쟁정책」에 관한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조찬간담회에서 박상조 정책국장은 2000년 주요 공정거래

정책방향으로 첫째, 기업구조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둘째,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셋째, 소비자주권의 확보를 위한 기반 확충, 그리고 넷째로 독과점구조와 담합관행의 개선을 들었다. 특히 21세기 경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식정보화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이며, 과연 세계화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소비자의 지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가 기본적인 정책방향 설정시 공정위가 고민했던 주요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홍동표 박사는 지식기반경제라든지, 신경제, 디지털 경제, 인터넷 경제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타난 배경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을 들었다. 즉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하드웨어를 등장케 했으며, 인터넷의 확산은 인터넷 접속수단의 다양화를 가져왔다고 언급했다. 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결국 거래비용과 검색비용 감소를 가져오면서 비용이 비례적으로 들지 않는 새로운 유통망의 등장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서의 경쟁정책 이슈와 불공정경쟁 유형으로 보상의 결과로서의 독점을 인정하기는 하나, 이외의 시장남용이라든지 기존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이 대체시장을 선점하여 경쟁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신규시장의 성장을 지연하는 행위, 그리고 기존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이 시장력을 이용하여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못하게 하는 것이 경쟁당국의 임무라고 밝혔다.

참석한 기업의 담당자들은 건의사항으로 첫째, 부실한 SOC(사회간접자본시설)전담법인에 대해서는 계열사 편입을 제외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향후 공기업과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계획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등과 이중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고 요청에 대해 박상조 국장은 감사원 감사는 회계감사를 의미하므로 공정위의 규제와는 목적과 성격이 다른 것이며,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민간기업이라는 경쟁상대가 있기 때문에 공기업이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규모기업집단 공정거래 교육 실시

본 협회는 지난 5월 25일(목)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2000년도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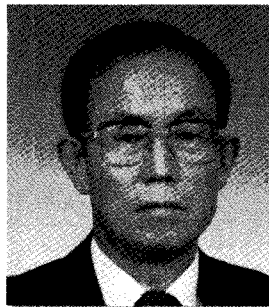
공정거래위원회의 위탁으로 실시한 동 교육에는 공정위 기업집단과 오승돈 서기관이 강사로 초청되어 2000년도 30대 대규모기업집단 본부 및 계열사의 간부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경제력 집중의 현황과 문제점,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적용대상, 출자총액 및 기업결합제한제도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질의 및 응답 내용은 다음호에 게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 관련 교육에 관한 문익는 본 협회 기획부(☎ 02)775-8870~2)로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사소식

신규회원사 소개

회원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법무법인 광장

대표 박 우 동

법 무 서 비 스 업

강 남 구 대 치 4동 892

회원사 참여란 신설

아는 것이 힘!

궁금한 사항이나 모르는 내용은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본 협회에서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연계하여
자세히 답변해 드립니다.

정책제언란 신설

바람직한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관한 회원사 여러분의 정책제언을 받습니다.
공정거래제도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자율적인 준수에 의해 만들어지는 제도입니다.
기업하기 쉬운 공정한 경쟁환경과 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여러분의
제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상담 코너 Q&A 신설

공정거래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십니까?
새로이 제·개정된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의 명쾌한 해석이 필요하십니까?
본 협회는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공정거래 관련 상담코너를 신설합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문의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하도급 관련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Q 3개사가 70%정도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 받고 있지 않았는데 서열 3위인 기업과 4위 기업이 기업결합을 하게되어 3사가 75%를 넘게 된다. 다만, 현재 3위의 시장점유율이 17%정도이고, 4위가 9%인데 기업결합을 하더라도 이 두 업체는 각각 독립법인체로 운영될 것이다. 공정거래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추정) 단서조항에 의하면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업체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 이 경우 9%인 4위 업체는 시장지배적사업자추정에서 제외되는 것인가? (한국제분공업협회)

A 공정거래법 제2조(정의)제7호 및 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추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3위 업체와 4위 업체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아무리 두 회사가 법인격을 달리하는 독립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은 서로의 계열회사가 되고 시장점유율 산정시 두 회사의 점유율이 합산된다. 따라서 4위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제4조의 2 단서조항(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75 이상, 다만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9%인 4위 업체 역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받게 된다. 이 시장의 시장지배적사업자추정업체는 4개사가 된다

Q 시장지배적사업자지정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존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받지 않았던 업종(예를 들면 백화점업)도 향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받을 수 있게 되는가? (신세계백화점)

A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제도는 시장획정시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시장을 획정하기 때문에 개별사건에서의 시장획정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1999년 2월에 폐지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공급자만을 대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했으나 수요자측면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사건 조사시 실질적인 시장지배력을 행사했는지의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하게 되었다. 즉

종전에는 ①상품과 영역의 공급자로 ②시장점유율이 1사 50% 이상, 3사 75% 이상이면 사전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을 받았으나, 현재는 ①상품과 영역의 공급자와 수요자이면서 ②시장점유율이 1사 50% 이상, 3사 75% 이상이면 시장지배력사업자로 추정된다.

Q 공개현상경품을 실시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규제내용은 무엇인가? (한국코카콜라)

A 현재 경품류제공에관한기준고시의 적용을 받는 경품류의 종류는 소비자경품류와 소비자현상경품류 2종류이며 공개현상경품은 1997. 6. 1자로 경품류제공에관한기준고시에서 삭제되었기 현재는 별 다른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Q 상품생산 및 공급업자가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여러 형태의 판매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즉 직영대리점, 백화점, 전문점, 할인점 등에 동일 제품을 공급하면서 공급조건에 따라 가격을 차별하는 경우의 문제점과 동일 제품에 대한 표시상의 가격(라벨상)과 실제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의 표시광고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BYC)

A 합리적인 거래조건에 따른 차별은 문제되지 않는다. 즉 대량구입이나 계절적인 요인(재고 및 이월상품 등), 거래조건(현금결제 등)에 따라 공급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할인가격폭이 너무 커서 타 사업자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제시 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가격표시에 있어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별히 재판매가격 유지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 이상 문제는 없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특히 화장품의 경우 표시가격과 상관없이 유통상이 가격을 결정해서 판매하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라벨상의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보다는 싸게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할인특매표시를 하는 경우가 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